

연사 2

## 친환경축산 시책방향

서 재 호

농림부 축산경영과



## 친환경축산 시책방향

’05. 10. 28

농 립 부  
축산경영과 서재호

### 목 차

1. 축산업의 여건
2. 친환경축산정책 추진현황
3. 유기축산 정책방향
4. 깨끗한 목장 가꾸기

<참고자료> 악취방지법, 해양배출

## 1. 축산업의 여건

### 가. 한국축산업의 위치

- '04년 농림부 생산액 37.3조원중 축산업  
생산액이 10.8조원(29%)
- 축산업생산액은 '95년(5.9조원)에 비해 55%증가
  - 양돈, 오리, 사슴 등 기타가축 신장세 증가 추세
- 축산물 소비량 지속 증가
- 육류 : ('90)19.9kg/1인당→('97)29.3→('04)31.3
- 축산농가는 상대적으로 젊은 경영주가 많고  
전업화가 뚜렷
- 40대 이하 경영주 비율 : 축산 28.8%(전체 9.7%)

농림부

3

### 나. 축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

- 국내 축산은 수입사료 의존도가 높으나 가축  
사육의 규모화·집단화를 통해 효율화 추구
- 가축분뇨처리 미흡, 질병발생 등으로 축산업  
을 환경오염 산업 인식
- 악취방지 등 환경규제 강화, 유기축산물  
공급, 동물복지 등 축산업에 대한 국민적  
요구가 증가될 전망

농림부

4

## 2. 친환경축산정책 추진현황

### 가. 환경영향을 고려한 축산기반 구축

#### □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

##### ○ 양분총량제 시행을 위한 준비('05~'06년)

- 축산환경 모니터링 팀 구성, 운영(농진청)
- 시·군별 양분(화학비료, 가축분뇨) 수급분석

##### ○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행('07년)

- 양분공급 평가, 차년도 양분총량 감축 목표제시
- 2년단위로 재평가 실시 및 감축목표 제시

농림부

5

##### ○ 양분과다 지역중 양분 추가 증가지역

- 정책자금 지원중단, 특별관리지역 지정·관리

#### □ 생활환경보전, 상수원수질보전 및 특별관리

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사육 제한 계획

##### ○ 가칭 “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” 제정

- 가축분뇨 발생저감 및 자원화 향상 근거 마련
- 농림부와 환경부 공동입법

농림부

6

- 친환경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과밀사육 억제
- 축산분뇨처리시설 허가·신고요건 개정
  - 현행(신고대상) : 소·말·젖소 축사면적 100~900㎡,  
돼지 50~1,000㎡, 사슴 500㎡ 이상
  - 개정 : 축사면적+사육두수 병행 관리
- 축산업등록제 시행('07)
  -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가축사육 기준 설정
- 축사 및 분뇨처리 표준설계도 개발보급('06)
  - 기존 슬러리축사 및 분뇨 표준설계도 폐지

농림부

7

- 친환경축사설치 시범사업 추진('05~'07)
- 사업목적 : 자원순환형 축사 재배치 등  
친환경축사 모델 개발
- 사업대상(6개소) : 종돈, 종계, 낙농, 양돈
- 지원조건
  - 축사 : 100% 융자(3%, 5년거치 10년상환)
  - 기반시설(진입로, 전기, 용수) : 80% 보조

농림부

8

- 분뇨분리 가능 축사 및 처리시설 구조개선**
- 현 행 : 가축분뇨 혼합(슬러리)처리 대부분
  - 문제점 : 퇴•액비화, 정화방류 등 처리에  
어려움 발생
  - 대 책 : 가축분뇨 관리가 용이한 분뇨분리  
형태로 전환 유도
    - 분뇨분리시설(고액분리기) 우선 지원 및  
점진적으로 미분리시설 지원 제한

농림부

9

## 나. 축산업 등록제 도입

- 도입목적**
- 가축방역, 친환경 축산, 이력추적시스템 등  
효율적 추진 및 선진 축산의 도약
- 주요내용**
- 등록대상 : 종축업, 부화업, 계란집하업,  
가축사육업(소·닭·오리 300㎡,  
돼지 50㎡ 초과 농가)
  - 등록내용
    - 농가주소, 사육시설종류 및 면적, 사육두수 등

농림부

10

### ○ 등록기간

- '05.12.26(가축사육업), '04.6.26(계란집하업)

### ○ 가축사육업의 경우 현재상태 등록

- 소독시설, 가축분뇨처리시설, 축사허가여부 제외

### ○ 적정가축사육밀도 유도('07.1.1 시행)

⇒ 축산업등록제는 농가 고유번호를 부여하여

사양•방역 및 안전관리 등 농가정보를

체계적 •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함

\* '05.7. 하순 현재 등록율 : 95%(37/39천호)

농림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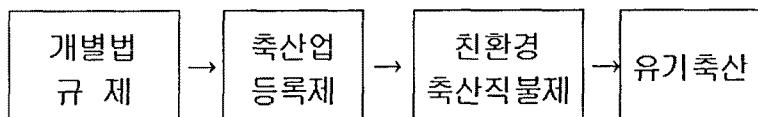
11

## 다.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추진

### □ 도입목적

○ 친환경 축산으로 환경보전, 축산물 안정성  
확보, 소득유지 등 지속 가능 축산기반 구축

### □ 친환경 축산을 위한 정책수단 단계



농림부

12



## □ 지급대상

- 축산업 등록, 축산직불제 프로그램 이행 농가

## □ 지급단가(호당)

- 기본프로그램 이행 : 1,300만원 한도내 지급
- 인센티브(조경수 식재) : 200만원 한도

농림부

13



## □ 축종별 지급조건

- 소 : 일정면적 이상 조사료포 확보, 발생분뇨의 60% 이상을 사료포에 환원
- 돼지, 닭 : 사육밀도를 축산업등록제 기준보다 20~30% 완화, 발생분뇨를 퇴·액비화하여 적법하게 전량처리
- 공통요건
  - 교육이수,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 기장
  - 출하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금지

농림부

14

### 3. 유기축산 정책방향

#### 가. 국내 유기축산 동향

##### 유기축산의 개념

-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수정란이식이나 유전자 조작을 거치지 않은 가축에 화학비료, 성장 호르몬, 동물약품 등 인위적 합성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고 운동장이나 휴식공간, 방목초지가 겸비된 환경에서 자연적 방법으로 분뇨처리와 환경이 제어된 조건에서 사육되고 가공, 유통, 평가, 표시된 가축의 사육 체계와 그 축산물을 의미

농림부

15

##### 유기축산물인증기준 제정('01.7.31)

: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

##### 국내 유기축산 인증현황

- 인증 품목(7개) : 돈육 1, 계란 4, 계육 2

##### 국내 유기축산 부진사유

- 사유 : 국내 유기사료 생산유통 기반 취약

농림부

16

## 나. 유기축산 추진계획

### < 추진방향 >

- ◇ 유기축산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
- ◇ 유기사료의 생산 및 공급기반 조성
- ◇ 품질인증 축산농가 유기축산 전환 유도
- ◇ 친환경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

#### □ 유기축산 시범사업 추진('03~'05)

- 국내여건에 적합한 사양관리 기준 마련
  - 한우, 젖소, 돼지, 육계, 산란계 사육
- 소비자 선호도 및 적정가격 등 경제성 분석

농림부

17

#### □ 유기사료 생산 및 공급기반 조성

- 자급유기사료 확보 방안 연구
  - 초식가축 : 목초지 또는 사료포 확보
  - 유기농산부산물 공급방안 강구

#### ○ 유기사료 성분등록 및 표시관리 도입방안

검토

- 사료관리법에 의거 성분등록도록 하고  
유기사료로 표시하여 판매방안 검토

농림부

18

#### **□ 품질인증 축산농가의 유기축산 전환 가능성**

경토(한우, 돼지, 닭 등 축산농가 중심)

- 기존 축산기반(축사, 부대시설, 초지 등)을 최대한 활용한 경제적 유기축산 기반 구축 방안

#### **□ 유기축산물가공품에 대한 표시기준 등 법적**

근거 마련(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)

- 축산물의 표시기준(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) 개정

농림부

19

### **다. 유기축산 시범사업 추진현황**

#### **□ 사업내용**

- 사업기간 : 2003~2005년(3년간)
- 사업장소 : 농협중앙회 안성목장

#### **□ 추진현황**

- '03.10월 : 유기조사료포 조성(11ha, 호맥 파종)
- '03.12월 : 축사 개보수 및 신축
- '04.02월 : 자가 유기사료 제조시설 설치
- 유기축산물 인증 : 계란('05.5), 육계('05.7), 돼지('05.7)
- '04.10월 : 한우 40두, 젖소 25두 유기인증 신청예정

#### **□ 향후계획 : 축종별 사양관리지침서 제작 및 보급**

농림부

20

## 4.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

### 가.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

#### 추진배경

- 환경과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증대
- 젖소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원유 위생수준 향상 및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노력 강화 필요

#### 기본방향

- (사)한국낙농육우협회가 주관이 되어 낙농가 자율운동으로 추진

농림부

21

- 깨끗한 목장 기준을 설정하여 모범목장을 선발 지원하며, 이를 전체 목장으로 확산

- “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”을 낙농체험 관광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소비자 인식 제고

### 나. 세부 추진계획

#### 목장 환경개선 교육 및 캠페인 전개

- “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본부” 구성 운영(중앙, 도)

농림부

22

- 목장 관리지침 및 환경개선 표준 매뉴얼 제작 보급
- “낙농환경 보호의 날” 지정(매월 셋째주 수요일)
- 지역별 순회교육 등 개최로 자율적 참여 조성

**□ 모범목장을 선정하여 운동효과 파급 확산**

- 우수목장 및 낙우회를 선정하여 장관 표창 등 실시
- 우수목장은 낙농체험 대상목장으로 우선 선정

농림부

23

## 다. 향후 추진계획

- 목장 관리지침 및 표준매뉴얼 연구용역 완료  
(10월)
- 지역별 순회교육 등을 통한 홍보강화  
(11~12월)
-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(12월)

농림부

24

<참고자료>

## 악취방지법

### 가. 악취방지법 재정배경

-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악취방지법을 별도 제정('04.2.9공포)  
⇒ '05.2.10시행(시행령·시행규칙 제정·  
공포 : '05.2.7)

농림부

25

### 나. 악취방지법의 주요내용

- “악취관리지역” 지정을 통해 악취 취약지역 중점관리
  -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던 방식에서 악취민원 상시 발생지역 등을 “악취관리지역”으로 지정, 중점 관리
  - 악취관리지역에 대하여는 시·도 조례로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규정
  - 악취관리지역 내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악취방지계획 제출의무화

농림부

26

### **<약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>**

- ① 약취민원이 3년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약취가 배출허용기준(기타지역)을 초과하는 경우
- ② 약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역내의 약취가 배출허용기준(기타지역)을 초과하는 공업지역으로서 시·도지사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- 국가산업단지, 농공단지, 일반공업지역, 전용공업지역 등

농림부

27

### **□ 약취관리지역내의 이행사항 및 벌칙**

- 약취방지계획에 따라 약취방지에 필요한 조치의무
-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
  - 1차 : 개선명령
  - 2차 : 사용중지 명령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
- 약취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- 약취방지계획에 의한 의무위반 : 100만원이하의 과태료
  - 개선명령 위반자 : 200만원이하의 벌금
  - 사용중지명령 위반자 :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의 벌금

농림부

28

## 악취관리지역밖의 사업장은 규제 완화

### -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한 조치

- (종전) 조치명령 ⇒ (개선) 1차 개선권고, 2차 조치명령

### - 조치명령 미 이행자

- (종전) 200만원이하의 벌금 ⇒ (개선)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※ 대기오염은 건강과 재산에 피해를 주지만 악취는 감각공해로  
불쾌감만 유발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규제 완화

농림부

29

## 다. 문제점

### 악취방지법 제정에 따른 악취관리 강화 예상

- 획일적으로 규제하던 방식에서 악취민원 상시 발생지역에 대한  
관리강화로 가축밀집 지역의 민원 발생 최소화 필요

### 새로운 법 제정으로 농가의 심리적 불안 경향

- 악취관리지역은 주로 시화공단 등 산업단지가 해당되고 악취  
관리지역 밖은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나 지역주민의 관심은 증가

### 악취방지 기술개발 미흡 등 근본적인 악취제거 곤란

- 특성상 축사 내외부의 공기순환·정화는 필수적이고 이로 인한  
냄새의 노출은 불가피한 반면 연구는 초보단계

농림부

30

## 라. 향후계획

### 배합사료에 발효촉진제(미생물 재제) 첨가 등을 통한 악취 저감 유도

- 악취 저감을 위해 발효촉진제 사용을 권장
- 양돈배합사료에 발효촉진제 첨가 추진 유도  
※ 중기적으로 사료공정규격 개정 검토 추진

### 가축분뇨 전(前)처리시설 지원 확대

- 액비화사업과 연계하는 가축분뇨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우선 지원

농림부

31

###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·연구개발 지속 추진

- 사료, 가축사양, 환경제어, 분뇨처리 등 악취 발생단계 및 요인별 악취저감 연구 추진

### 악취 저감 사례 발굴, 교육·홍보 강화

### 환경과 조화하는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

- 축산업등록제, 친환경축산직불제 등 정착

농림부

32

<참고자료>

## 해양배출

### □ 양돈분뇨 해양배출 현황

톤당 11~23천원으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년차적으로 대폭 증가

구분	2000	2001	2002	2003	2004
양돈분뇨 발생량(천 m <sup>3</sup> )	12,593	13,368	13,758	14,151	13,656
해양 배출량(천 m <sup>3</sup> )	765	1,127	1,626	2,006	2,346

\* 해양배출되는 축산분뇨는 대부분 양돈분뇨임. 분뇨발생량 4.2kg/두

농림부

33

### □ '96(런던협약)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대책수립(해수부)

- 해양배출량 단계적 감축(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 '05.3.9)
  - 폐기물 해양배출량을 2011년도 4천 m<sup>3</sup>까지 배출량을 저감 설정

구분	2003	2004	2005	2007	2011
폐기물 배출량(천 m <sup>3</sup> )	8,874	9,749	9,228	7,000	4,000
전년대비 증감(%)	4.7	9.8	△5.3		

농림부

34

## □ 해양배출 감소대책에 따른 대책 추진상황

-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시설개보수자금 지원
  - 지원액 : ('91~'03) 9,644억원 → ('04)402 → ('05)333
- 축분 퇴·액비의 수요확대 사업 추진
  - 유기질비료(축분퇴비) 가격차손보전 확대지원
  - 자원화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(보조비율 확대 30% → 50%)
- 환경부와 협동으로 “가축분뇨 관리·이용대책” 수립 추진
  - 가축분뇨의 기준 “정화처리” 대상에서 “자원”으로의 인식 전환으로 자원화 확대 유도
  - 부처간 가축분뇨 관리정책 연계성 강화, 종합대책 강구

농림부

35

## □ 향후 추진계획

- 관련부처(해양수산부) 협의 추진
  -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자금확보 등 준비를 위한 해양배출 감축시기 유예기간(최소 5년) 설정
  - 해양배출량 감축시 가축분뇨의 종전 배출비율 적용 제도화
    - \* '04년 현재 전체 해양배출량 대비 가축분뇨는 24%수준
-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시설 개보수자금 지속 지원
-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이용활성화 유도
  - “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” 제정
  - 퇴·액비 품질향상을 위한 전처리시설 지원 확대
-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을 위해 지역단위 양분 종량제 시행 및 가축사육두수 종량제 도입검討 추진

농림부

36